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9. 10.  
행정재무위원회

## 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8월 2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

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윤정중)

- 가. 제안이유
  -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이 개정되어 등록시행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- 나. 주요골자
  - 제3조 (종류및요액)의 <별표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
    - < 2. 각종 인·허가에 관한 사항> 중 <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>란에
      - (10)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(1건 50,000원)란 신설
      - (11)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(1건 25,000원)란 신설
      - (12) 공연장 설치허가중 재교부 신청 (1건 5,000원)란 신설
    - < 2. 각종 인·허가에 관한 사항> 중 <가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>란에
      - (11) 음반·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(1건 4,000원)란 신설
      - (12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사항변경 신청 (1건 2,000원)란 신설
      - (13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중 재교부 신청 (1건 2,000원)란 신설

## 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: 허영훈)

동 조례는 '95.12.29. 공연법이 개정되고 '96.6.30. 시행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·감독 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양되고 '96.6.29. 공연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장 설치허가 등 신청수수료도 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서울특별시공연장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연장 설치 허가등 3건의 수수료를 동 조례에 신설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, '95.12.6.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과 '96.6.7. 동법률시행령의 시행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양되고 신청수수료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·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근거로 징수하던 음반·비디오물 유통관련법 등록 신청등 3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상위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되며,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도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경향에 따라 수수료원가 산출을 기초로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.

## 4. 審 査 結 果 : 원 안 의 결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8. 19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이 개정되어 등록시행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제3조 (종류 및 요액)의

〈별표〉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

“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19종)”을 “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31종)”으로 하고,

〈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〉의 〈 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〉란에

(10)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(1건 50,000원)란 신설

(11)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(1건 25,000원)란 신설

(12)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(1건 5,000원)란 신설

〈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〉중 〈 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〉란에

(11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신청 (1건 4,000원)란 신설

(12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사항변경 신청 (1건 2,000원)란 신설

(13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(1건 2,000원)란 신설

### 3. 참 고 사 항

- 관계 법규 :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25조(수수료)
- 예산 조치 : 없음
- 합의 사항 : 없음

4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별첨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〉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

“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19종)”을 “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31종)”으로 하고,

〈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〉의 〈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〉란에 (10)~(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0)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	1건	50,000원
(11)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	1건	25,000원
(12)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	1건	5,000원

〈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〉 중 〈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〉란에 (11)~(1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1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 신청	1건	4,000원
(12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사항변경 신청	1건	2,000원
(13) 음반·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	1건	2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		개	정	(안)
< 별표 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19종)				< 별표 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31종)		
종	목	단위	수수료액	종	목	수수료액
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(1)~(9) 생략 (신 설) (신 설)  (신 설)				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(1)~(9) 현행과 같음 (10) 공연장설치허가 신청 1건 50,000원 (11)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5,000원 (12)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 교부 신청 1건 5,000원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~(10) 생략 (신 설)  (신 설)  (신 설)			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~(10) 현행과 같음 (11) 음반·비디오물유통 관련업 등록 신청 1건 4,000원 (12) 음반·비디오물유통 관련업 등록사항변경 신청 1건 2,000원 (13) 음반·비디오물유통 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,000원		